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목 차>

#### 1.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가입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한송희
	담당부서 (과)	관광기반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김현환		연락처	044-203-2840
	과장	최현승		이메일	van1770@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가입		
	2.규제조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3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9조		
	4.유형	개정 및 신설	5.입법예고	2019.6.4.~7.1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세부업종 신설에 따른 가입기준 규정> ○ 여행업의 세부업종으로 “관광안내업”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 관광안내업(신설 세부업종)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여행업자 ○ 이해관계자: 국민(관광객) 및 외국인(관광객)		
	9.규제목표	신설 업종인 관광안내업 이용 내외국인(관광객) 보호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기준 규정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해당없음		



#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행 여행업 보증보험등에 관한 규정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토록 하고 있음.
-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설 세부업종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을 정하여 관광객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법적 근거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9조: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이하 "보험 가입 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을 국내여행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
  - 관광안내업과 국내여행업의 업역

업종	영업지역	대상자	제공 상품
관광안내업	국내	내국인, 외국인	관광안내 (운송·숙박시설의 알선·계약체결의 대리 제외)
국내여행업	국내	내국인	운송·숙박, 각종 시설 알선·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여행편의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18. 9월~’19. 3월) “여행업 제도 개선 TF” 6회 운영
  - 참석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 없음
- (“19. 4월) “여행업 보증보험 관련 회의” 개최
  - 참석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법률 자문 변호사
  -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 없음

## 3. 규제목표

-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손해배상 범위를 법률상 정의된 업역에 맞추어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관광객)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
- 신설 업종의 사고 시 관광객 피해 구제 수단 마련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관광안내업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 규정
  - 목적: 신설 업종의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수단: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 규정
    - ☞ 영업지역이 동일하며 매출규모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여행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성을 갖춘 규제 설정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경영활동																									
② 규제 방식	정보규제(등록, 제출의무 등)																									
③ 예비분석모델	예비분석표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이 단일업종 내에 있는 바, 단일업종에 대한 예비분석표 활용																									
④ 대상 업종	여행업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기업 규모별 규제부담비율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규모별 본포 및 규모별 매출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여행업 대비 종업원 10인 미만 소비업 비율: 92.6%</li> <li>- 전체 여행업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49.3%</li> <li>- 소기업 대비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12.1%</li> </ul> </li> </ul> <p>② 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3점 &lt;지표값을 이용한 차등화 점수 확인&gt;</p> <table border="1"> <thead> <tr> <th>지표값</th> <th>비율</th> <th>차등화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td> <td>55% 미만</td> <td>3</td> </tr> <tr> <td>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td> <td>40% 이상</td> <td>0</td> </tr> <tr> <td>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td> <td>30% 미만</td> <td>0</td> </tr> </tbody> </table> <p>③ 차등화 대상 결정: 차등화 불확실(△) &lt;규제 차등화 예비분석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지표값 총점</th> <th colspan="3">운영관리</th> </tr> <tr> <th>신고</th> <th>기준설정</th> <th>허가</th> </tr> </thead> <tbody> <tr> <td>3</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지표값	비율	차등화 점수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	55% 미만	3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40% 이상	0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30% 미만	0	지표값 총점	운영관리			신고	기준설정	허가	3	△	△	△
지표값	비율	차등화 점수																								
① 전체 대비 소기업 업체 수 비율	55% 미만	3																								
② 전체 대비 소기업 매출액 비율	40% 이상	0																								
③ 소기업 평균 매출액 대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평균 매출액 비율	30% 미만	0																								
지표값 총점	운영관리																									
	신고	기준설정	허가																							
3	△	△	△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불확실(△)																									

### ○ 기타 고려사항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해당없음

## Ⅲ. 규제의 실효성

### 1. 규제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의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규제 차등화 방안: 해당없음

##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 관리중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18.9월부터 '19.3월까지 6번에 걸쳐 “여행업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며 ‘관광안내업’ 신설 및 이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 마련 결정
- '19.4월 “여행업 보증보험 관련 회의” 개최 결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개정 의견 수렴

### 2. 향후 평가계획

- 매년 실시하는 여행업 현황조사, 여행불편처리사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조치할 계획

### 3. 종합결론

- 신설 ‘관광안내업’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관광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등의 가입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8	2018	10	-	천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2020년 여행업 기준 보증보험 가입 비용(추산)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2,162,309,200		2,162,309,200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1,091,745,000,000	
정부				
총 합계		2,162,309,200	1,091,745,000,000	2,162,309,200
기업순비용		2,162,309,200	연간균등순비용	98,479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 <규제대안 1 : 여행업자 보증보험등 가입 규정 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여행업자

□ 직접비용 : 보증보험등 가입비용

업무제목	여행업 보증보험등 가입 규정 개정
설명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손해배상 범위를 법률상 정의된 업역에 맞추고 신설 세부업종의 가입기준 규정

세분류	여행업 보증보험등																																															
활동제목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가입																																															
비용항목	운영																																															
비용	2,162,309,200원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여행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입기준 상이(비균등)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규정사항																																															
근거설명	○ 여행업 세부업종별 보증보험등 가입 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체수</th> <th>가입총액</th> <th>보증총액</th> </tr> </thead> <tbody> <tr> <td>21,957</td> <td>2,162,309,200</td> <td>1,091,745,000,000</td> </tr> </tbody> </table>			업체수	가입총액	보증총액	21,957	2,162,309,200	1,091,745,000,000																																							
	업체수	가입총액	보증총액																																													
	21,957	2,162,309,200	1,091,745,000,000																																													
	* 산출 기준																																															
	- 업체수 및 매출액: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9)																																															
	- 가입비용: 2018년 여행공제회 가입 기준 적용																																															
	1. 일반여행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출액</th> <th>업체수</th> <th>가입비용</th> <th>가입총액</th> <th>보증총액</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1,186</td> <td>160,000</td> <td>189,760,000</td> <td>59,300,000,000</td> </tr> <tr> <td>1억원~5억원</td> <td>1,467</td> <td>67,600</td> <td>99,169,200</td> <td>95,355,000,000</td> </tr> <tr> <td>5억원~10억원</td> <td>1,636</td> <td>88,400</td> <td>144,622,400</td> <td>139,060,000,000</td> </tr> <tr> <td>10억원~50억원</td> <td>1,359</td> <td>156,000</td> <td>212,004,000</td> <td>203,850,000,000</td> </tr> <tr> <td>50억원~100억원</td> <td>-</td> <td>260,000</td> <td>-</td> <td>-</td> </tr> <tr> <td>100억원~1천억원</td> <td>10</td> <td>1,040,000</td> <td>10,400,000</td> <td>10,000,000,000</td> </tr> <tr> <td>1천억원 이상</td> <td>3</td> <td>1,570,400</td> <td>4,711,200</td> <td>4,530,000,000</td> </tr> <tr> <td>합 계</td> <td>5,661</td> <td>-</td> <td>660,666,800</td> <td>512,095,000,000</td> </tr> </tbody> </table>			매출액	업체수	가입비용	가입총액	보증총액	1억원 미만	1,186	160,000	189,760,000	59,300,000,000	1억원~5억원	1,467	67,600	99,169,200	95,355,000,000	5억원~10억원	1,636	88,400	144,622,400	139,060,000,000	10억원~50억원	1,359	156,000	212,004,000	203,850,000,000	50억원~100억원	-	260,000	-	-	100억원~1천억원	10	1,040,000	10,400,000	10,000,000,000	1천억원 이상	3	1,570,400	4,711,200	4,530,000,000	합 계	5,661	-	660,666,800	512,095,000,000
	매출액	업체수	가입비용	가입총액	보증총액																																											
1억원 미만	1,186	160,000	189,760,000	59,300,000,000																																												
1억원~5억원	1,467	67,600	99,169,200	95,355,000,000																																												
5억원~10억원	1,636	88,400	144,622,400	139,060,000,000																																												
10억원~50억원	1,359	156,000	212,004,000	203,850,000,000																																												
50억원~100억원	-	260,000	-	-																																												
100억원~1천억원	10	1,040,000	10,400,000	10,000,000,000																																												
1천억원 이상	3	1,570,400	4,711,200	4,530,000,000																																												
합 계	5,661	-	660,666,800	512,095,000,000																																												
2. 국외여행업																																																
<table border="1"> <thead> <tr> <th>매출액</th> <th>업체수</th> <th>가입비용</th> <th>가입총액</th> <th>보증총액</th> </tr> </thead> <tbody> <tr> <td>1억원 미만</td> <td>3,284</td> <td>96,000</td> <td>315,216,000</td> <td>98,505,000,000</td> </tr> <tr> <td>1억원~5억원</td> <td>2,726</td> <td>128,000</td> <td>348,864,000</td> <td>109,020,000,000</td> </tr> </tbody> </table>			매출액	업체수	가입비용	가입총액	보증총액	1억원 미만	3,284	96,000	315,216,000	98,505,000,000	1억원~5억원	2,726	128,000	348,864,000	109,020,000,000																															
매출액	업체수	가입비용	가입총액	보증총액																																												
1억원 미만	3,284	96,000	315,216,000	98,505,000,000																																												
1억원~5억원	2,726	128,000	348,864,000	109,020,000,000																																												

5억원~10억원	1,882	57,200	107,650,400	103,510,000,000
10억원~50억원	703	104,000	73,112,000	70,300,000,000
합 계	8,594	-	844,842,400	381,335,000,000

### 3. 국내여행업

매출액	업체수	가입비용	가입총액	보증총액
1억원 미만	2,831	64,000	181,152,000	56,610,000,000
1억원~5억원	1,448	96,000	138,960,000	43,425,000,000
5억원~10억원	1,144	144,000	164,736,000	51,480,000,000
10억원~50억원	280	88,400	24,752,000	23,800,000,000
합 계	5,702	-	509,600,000	175,315,000,000

### 4. 관광안내업

매출액	업체수	가입비용	가입총액	보증총액
1억원 미만	1,400	64,000	89,600,000	28,000,000,000
1억원~5억원	600	96,000	57,600,000	18,000,000,000
5억원~10억원		144,000		
10억원~50억원		88,400		
합 계	2,000	-	147,200,000	23,000,000,000

- 기존의 여행업자는 모두 보험가입 대상이었으므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변경이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광안내업 신설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 업체수는 연간 2천개소, 매출액 5억원 미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산출

#### 간접편익 :

(정량)제목	사고발생 시 보험가입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업 수행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여행업자의 부담완화
근거설명	○ 여행업 부도, 파산 등의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관광객 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하는 부담을 보험을 통해 완화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편익 : 국민(관광객) 손해배상

(정성)제목	여행사 상품 이용 국민(관광객) 보호 강화
근거설명	○ 여행사 상품 이용 국민(관광객) 보호 강화 - 여행업 보증보험등의 손해배상 범위를 '여행알선'에 한정하지 않고 '여행업 수행'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관광객) 보호 강화 - 신설 세부업종인 '관광안내업'의 보증보험 가입기준 규정으로 관련 여행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관광객 보호 수단 마련